

# 에너지 & 안전

산자부 에너지안전과

## 1. 개요

1999년 5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산업자원부 내에 가스·전기·석유 등 에너지시설 전반(광산보안, 원자력 안전 제외)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에너지안전과가 탄생하게 되어 기존의 분야별 안전관리를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더욱 충실히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에너지안전관리체계는 산업자원부가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수립, 법령 제개정, 제도운영 및 지방자치단체 지도감독을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가 에너지시설의 설치·변경에 대한 허가 또는 인가와 부적합시설 등에 대한 위해방지조치 등을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안전분야), 한국전력공사(안전분야) 등 전문기관이 검사·점검, 교육, 홍보 등 대국민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3단계로 이루-

어져 있다. 안전관리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검사·점검 등의 업무는 산업자원부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다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동시에 산업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위임업무 또는 위탁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함으로써, 검사·점검 등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다.

에너지안전 법적체계는 가스·전기·석유 등 각 분야별 안전을 규정하는 각각의 개별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고압가스와 석유화학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규정하고 있고, 액화석유가스(LPG)시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안전분야), 그리고 액화천연가스(LNG) 등 도시가스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안전분야)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송유관시설에 대해서는 송유관안전관리법이,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안전분야)이 안전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에너지안전관리는 상기 법령에 따라 주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조치 및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에너지 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시 행정관청의 허가·인가조치, 시설주의 자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관리규정, 전문기관의 시설검사 또는 점검, 시설불량시 행정관청의 개

선명령 및 위해방지조치 등을 그 예로 들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타율적 성격의 안전관리제도로는 만연하는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의 안전관리는 전국민이 안전의식을 확고히 하도록 안전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전기술 및 안전기기의 개발·보급에 힘쓰면서 시설주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보험 등과 연계된 자율안전관리제도를 도입·정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 2. 가스시설 안전관리

## (1) 가스안전관리체계의 변천

우리 나라에서 가스안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초반 주로 사용했던 산소, 수소, 아세틸렌 등 일반고압가스에서 가스사고가 증가하면서부터였다.

1962년 16건의 가스사고(12명 사망)가 발생하자 내무부는 같은 해 12월 24일 압축가스 및 액화가스의 제조·판매·저장·운반사용과 가스용기의 제조·수리 및 검사 등을 규정한 “압축가스 등 단속법률”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못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던 중 1964년 4월 대한석유공사가 LPG를 생산함으로써 가정용 연료로서의 대중화에 첫발을 내딛고 같은 해 8월 19일 서울 마포아파트에서 LPG폭발사고가 일어

나면서 점차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1967년 7월 19일 대통령령 제2879호, 같은 해 8월 26일 상공부령 제189호를 공포·시행하게 되면서 비로소 가스 안전관리 정책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71년 12월 15일 대연각호텔의 가스참사를 계기로 1973년 1월에 신설된 공업진흥청에서 가스안전관리를 전담하도록 하는 한편, 압축가스 등 단속법률을 폐지하고 1973년 2월 7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제정함으로써 단속위주에서 계도 및 안전검사 위주로 전환하고 전국적인 안전검사체제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1978년 12월 5일 동법 개정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정으로 어느 정도 가스정책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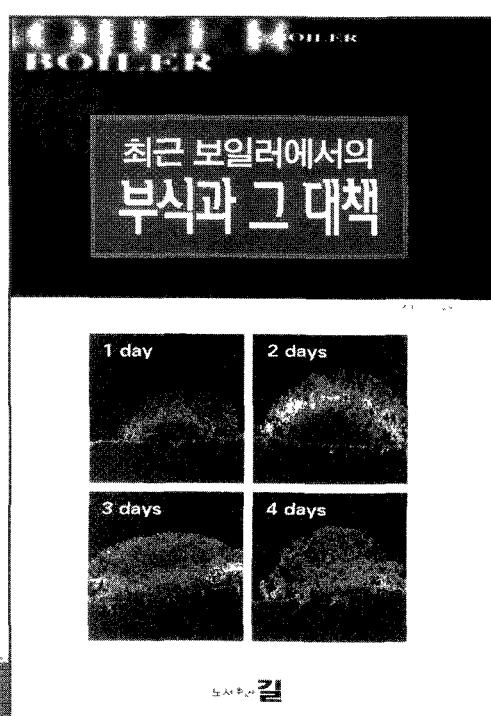
한편, 도시가정 및 상업용 연료의 가스화 촉진정책에 따라 연료용 가스 사용량이 급증하게 되어 1983년 12월 31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전문개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的 제정, 도시가스사업법의 전문개정으로 가스종류별 3법체계로 정비하게 되었다. 이로써 정부주도의 안전관리에서 부문별 민간주도의 자율안전관리체계로 접근하고 가스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가스안전관리체계의 기본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lt;다음호에 계속됩니다&gt;

www.energycenter.co.kr

한국에너지정보센터가 만드리는

## 열관리 필독서



좋은 책, 좋은 잡지 만들기 16년, 에너지정보센터에서는 계속해서 좋은 책을 발행해 나가겠습니다.

### 최근 보일러에서의 부식과 대책

- 보일러의 방식기술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사례, 방법 등이 확립되어 있으나 부식에 관한 문제는 환경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 환경에 적합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보일러 취급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부식·방식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을 알기 쉽게 해설함과 동시에 가능한 한 부식사례를 많이 들어 재해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정리하였다.

■ 정가 15,000원 ■ 238페이지

※ 신간안내 ‘보일러와 버너’ – 미국 대학원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책으로 곧 발행될 예정입니다.